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34 | 2024.05.07 (2024.04.29~05.06)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4.29~05.06)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14개 산업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차, 원전, 수소, 항공우주, 탄소, 조선, 철강, 섬유, 광학, 기계, 전기)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우대 추천기업을 모집키로 하였으며, 추천기업은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속한 여신 심사를 거쳐 금리 추가 감면 등 자금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 우대 지원은 산업부, 금융위 및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24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후속조치이며, 올해에는 원전과 섬유 산업을 새롭게 추가하여 14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추천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추천기업 선정 요건은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신청기업은 5월 27일까지 산업별 담당기관에 신청서와 추천요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에 부합하는 추천기업 명단은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달되며, 정책금융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우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한편, 작년 추천기업(123개사)은 올해 별도 신청 없이, 정책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한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②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 고도화, ③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④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에 따라 시행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사피해 유형별로 손실보상금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 가능한 기관, 자기적합확인자가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사항,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합성평가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부적합 보고의 세부 절차와 과태료 기준,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서류 제출 의무와 행정처분 기준, 시험기관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수행자격 개정에 따라 부실설계 방지, 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대규모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의 고품질 안전제품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2024.7.31.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리제도에 차입, 외부감축활동(상쇄) 제도 도입과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및 예비분 보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2024. 8. 7. 시행예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 하역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2024. 7. 31. 시행예정)됨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16.8.12.)된 이후 현장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 및 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공동주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14. 공포)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또한, 가명정보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비활동·무실적 결합전문기관에 대해 재지정 심사 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작환경이 열악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2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의사일정(안)】

<법제사법위원회>는 5/7(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고유법 상정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9(목)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법안 상정 등

<환경노동위원회>는 5/7(화)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법안 상정 등을 안건으로 개의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부처간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7
- 제1차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8
- 금융위원회·정책금융기관과 손잡고 정책금융 우대 지원(산업통상자원부)..... 8
-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국토교통부)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1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1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2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3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특허청)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행정안전부) 18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행정안전부) 19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20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21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2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2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2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2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6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통신위원회) 27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2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30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30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1인) 31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0인) 3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0인) 31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2인) 3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4.29~05.06) [바로가기](#)

- [노동] 최근 저성과자 해고 관련 판결들이 주는 시사점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조세]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건설/부동산]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례
- [조세]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하여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은 사례
- [소송]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기업인수/합병] 2023년 회사법 주요 판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부처간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추진 - 과기정통부-행안부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로 협업과제 5건 발굴·선정	2024-05-01
--------------------	---	------------

정부는 부처 칸막이 해소 및 과제 중심 협업을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로 선정하고 지난 2월 인사교류를 시행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양 부처 교류직위 국장급을 공동대표로 「전략적 협업 협의회」를 발족함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양 기관이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발굴·선정,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고 협업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24.1.)」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및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산정 기준 등 체계 개선

② 인공지능(이하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 다양한 재난·사고(산업재해, 교통사고 등)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 추진

* 충북(산업안전), 충남(도로·생활안전), 대전(도시안전), 세종(시설안전)

③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

- 민간의 초거대 AI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하고, 각 기관이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및 인프라 구현
- 혁신적인 선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 등 지원

④ 우수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

-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및 범정부 협력 사절단 등이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

⑤ 지역 디지털서비스 확산사업의 효과성 제고

- 지역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사업의 차별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계획 수립, 공모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 상호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업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시너지 극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공지능·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제1차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 개최

2024-04-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여 AI·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통신 마이데이터

-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3.3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법령 마련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② 가명정보 경진대회

- 양 부처에서 운영하던 가명정보 활성화 경진대회를 금년부터 통합 운영하여, 저변 확대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함

③ 인공지능 보이스피싱 대응

-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보이스 피싱 범죄로 신고된 음성 파일에서 범인의 음성정보(데이터셋)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④ ICT규제샌드박스 특례지정 지원

-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모델이 특례로 지정되어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개인정보활용 기업과의 「공동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협력

- 디지털 심화 시대 대응을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마련 중인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계획 관련, 다양한 디지털 관련 이슈*들이 개인정보와 연관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범체계 정립 및 제도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 ▲ 잊힐 권리, ▲ 디지털 유산, ▲ 마이데이터 활용, ▲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AI 등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정책금융기관과 손잡고 정책금융 우대 지원
- 반도체 등 14개 분야 추천기업에 여신심사 및 금리·보증요율 우대

2024-05-02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14개 산업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차, 원전, 수소, 항공우주, 탄소, 조선, 철강, 섬유, 광학, 기계, 전기)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우대 추천기업을 모집키로 하였으며, 추천기업은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속한 여신 심사를 거쳐 금리 추가 감면 등 자금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음

정책금융 우대 지원은 산업부, 금융위 및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24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후속조치이며, 올해에는 원전과 섬유 산업을 새롭게 추가하여 14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추천기업을 모집함

추천기업 선정 요건은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신청기업은 5월 27일까지 산업별 담당기관에 신청서와 추천요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요건에 부합하는 추천기업 명단은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달되며, 정책금융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우대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한편, 작년 추천기업(123개사)은 올해 별도 신청 없이, 정책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정책금융 자금지원 우대 추진절차로는

① 신청 희망 기업은 공고문의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와 ‘산업별 신청자격’ 확인

< 제출서류 목록 >

구 분	번호	제출서류	수량
공 통	①	정책금융 지원 우대 신청서	1부
	②	최근 3개년도(’20~’22)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분야별	③	지원분야 요건(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해당 요건 증빙자료	1부

② 각 산업별 담당기관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기업 명단을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를 거쳐 정책금융기관에 송부

③ 정책금융기관은 기업별 대출·보증 심사를 통해 우대지원 제공

< 정책금융 자금공급 추진 절차(안) >

구 분	주요 내용	담 당
신청서 접수	◦ 프로그램 신청·접수	산업별 담당기관 → 산업부
요건 심사·명단 제출	◦ 증빙자료 검토 및 보완요청	
추천기업 명단 송부	◦ 추천기업 명단 송부	산업부 → 금융위
대출·보증 심사	◦ 추천기업별 대출·보증 심사	정책금융기관
자금 공급	◦ 대출·보증 우대 지원	정책금융기관

(예시) 정책금융기관별 주요 우대지원 내용

기관	우대지원 내용(상품 등)
산업은행	▪ 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반도체, 이차전지 등 정부발표 9대 혁신성장 분야 / 시설·운영) - (금리우대) 최대 △0.60%p + 핵심 우수기업인 경우 △0.10% 추가우대 ▪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자금(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 기업 / 시설·운영) - (금리우대) 최대 △0.50%p + 핵심 우수기업인 경우 △0.10% 추가우대 ▪ 중소·중견 지원자금(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시설·운영) - (금리우대) 최대 △0.40%p + 핵심 우수기업인 경우 △0.10% 추가우대
중소기업은행	▪ 「성장유망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례」 - (금리우대) 정부의 핵심 우수기업 추천기업은 최대 △1.5%p 이내 금리감면 가능
신용보증기금	▪ 역동경제 선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신성장동력산업 등) -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에 보증비율 우대(최대 100%), 보증료를 지원(최대 0.5%p)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 전략품목 수출지원 특례보증(8대주력·12대신수출동력산업기업) - 정부중점 수출전략품목을 취급하고 수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보증비율 우대(최대 95%), 보증료 우대(최대 0.6%p)

※ 상기 내용은 최종 지원결정 기업 대상 우대사항이며, 정책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스마트도시의 새로운 방향 제시

2024-04-30

국토교통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함

*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산업활성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공동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윤성훈 공동위원장 등) 등 총 24인으로 구성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함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 (데이터허브)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

②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 고도화

-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 마련

③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 신산업 규제특례 및 토지이용규제 특례를 통해 편리한 실증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주도 투자환경 마련

-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 추진

④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 추진

* (K-City Network) 정부 간 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발굴 및 현지 진출을 위해 ’20년부터 현재까지 23개국 41건의 스마트도시 계획, 해외실증 지원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 확대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5-01 시행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5-01 시행
-------	-----------------------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제3조의2제1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01 시행예정
---------------	--------------------	-----------------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사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던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와 학력·경력자에게도 인정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인정교육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감리원의 자격기준 완화 (별표 2)

-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학력·경력자도 특급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기술자격자 외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학력·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급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중급감리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경력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감리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②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인정교육 제도 개편 (별표 5)

- 감리원의 자격기준 완화로 특급감리원 및 고급감리원 인정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감리원 인정교육 중 특급·고급감리원 과정을 특급감리원 과정 및 고급감리원 과정으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특급감리원으로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은 특급감리원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완화로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인정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에 기술자격자에 대한 특급기술자 과정을 신설하고 학력·경력자에 대한 특급기술자 과정 및 고급기술자 과정을 신설하며, 고급기술자로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는 등급변경자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③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완화 (별표 6)

-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학력·경력자도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기술자격자 외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학력·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중급기술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경력요건 2년을 폐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5-01 시행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812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

이에 따라,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전기공사의 발주자 등에게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등 통지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제8조제2호, 제12조의2, 제16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의2제1항제3호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5-01 시행

(다만, 제1조의4, 제5조의5제1호의2가목 및 별표 1의 통합발전소사업란 부분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예정)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전기신산업으로 추가하고,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439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 및 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 등 송전·변전 특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조의4 신설, 제5조의5제1호의2가목, 제7조의3 신설,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별표 1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5-01 시행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전기신산업으로추가하고,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및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 등 송전·변전 특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의3 신설, 제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5 신설, 제17조의6 신설 등)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4-30 시행

민간임대주택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가 아닌 소형·저가의 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무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제34조제3항)**

특허청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01 시행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

이에 따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제2조제2항제2호, 제26조의2 신설, 제33조제5호 신설, 제59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2 신설, 제91조의2 신설 등)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29. ~06.05.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24.3.28)」 후속조치로써 건설사업의 미분양 리스크 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수요 촉진 필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합산배제 주택 확대 (안 제4조제1항제26호 신설)

- 기업구조조정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함으로써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tel:044-215-43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29. ~06.10.
-----------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존 통합관리센터 업무에 '고유식별번호 공유'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 추가 (안 제51조의제1항 및 제1항제4호)
- ② 통신사가 통신서비스 사용 차단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한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도 추가 (안 제51조의제2항제3호)
- ③ 안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에 필요 비용 지원 가능 (안 제51조의제4항)
- ④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시 전문기관의 장의 확인 사항 규정 (안 제51조의제5항)
- ⑤ 중고 단말 매수인이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용 차단 해제 요청 근거 마련 (안 제51조의제6항)
- 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안 제51조의제7항 및 제8항)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전화: 044-202-6652, 팩스: 044-202-6011\)](tel:044-202-665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에 따라 시행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마련 (안 제6조의2 신설)
- ②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신청방법·발급·보완요청 등 절차 마련 (안 제6조의3 신설)
- ③ 인증제 유효기간 설정(5년), 연장 및 절차 마련 (안 제6조의4 신설)
- ④ 인증제 신청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2)
- ⑤ 인증제 업무 위탁의 근거 마련 (안 제15조의제2항)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mailto:science@korea.go.kr) (전화: 044-202-6652, 팩스: 044-202-6011)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24.7.24.)임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사피해 유형별로 손실보상금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 가능한 기관, 자기적합확인자가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사항,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합성평가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부적합 보고의 세부 절차와 과태료 기준,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서류 제출 의무와 행정처분 기준, 시험기관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불법 드론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산정기준과 절차를 규정 (안 제53조의4, 별표 5의2)
- ②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자기적합확인 제도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안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6, 제117조의2, 제119조, 제123조, 별표 23, 별표 28)
 -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 시험할 수 있는 기관, 서면 관리,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적합성평가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 행정처분 완화

③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험기관 관리, 부적합 보고, 대리인 지정 등 전파법 개정에 따른 전파법 시행령 정비 (안 제77조의9, 제77조의11, 제77조의12, 제77조의14, 제77조의16, 제97조의3, 제120조부터 제123조, 별표 14의3, 별표 23부터 별표 24, 별표 27의2, 별표 28)

-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관보 → 관보 및 인터넷), 시험근거 자료 미작성 등의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등
- 부적합 보고의 절차,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규정 등
-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출서류와 허위 지정 시 행정처분 규정 명확화
- 시험기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tel:044-202-4954) (전화: 044-202-4954, 팩스: 044-202-60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03.
~05.27.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수행자격 개정에 따라 부실설계 방지, 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대규모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2)
- ②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 (안 제8조의3)
- ③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안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 ④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 (안 제34조제2항)
- ⑤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규정 (안 제37조의2)
-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⑦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 (안 별표10)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tel:044-202-6424) (전화: 044-202-6424, 팩스: 044-202-60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03.
~05.27.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19546호, 2023.07.18. 공포, 2024.07.19. 시행)에 따라 건축·시설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 ②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 (안 제8조의2 및 별표 1)
- 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 (안 제8조의3)
- ④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 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tel:044-202-6424) (전화: 044-202-6424, 팩스: 044-202-6011)

행정안전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4.04.29.
~06.10.

국내 승강기 산업은 성장 대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 사업체 구성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국내 승강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업계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집중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를 위해 고품질의 안전제품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58호, 2024.1.30. 제정, 2024.7.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승강기 산업의 지속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절차와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 ② 승강기 사업체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함 (안 제4조~제5조)
- ③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및 출연금의 지급 방법, 출연금의 관리·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6조~제8조)
- ④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및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요청 가능한 기금을 구체화함 (안 제9조~제10조)
- 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56조~제58조)에서 이관되는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의 감독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 ⑥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제15조)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tel:044-205-4293) (전화: 044-205-4293, 팩스: 044-205-8910)

행정안전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2024.04.29.
~06.10.

국내 승강기 산업은 성장 대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 사업체 구성 및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국내 승강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업계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집중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를 위해 고품질의 안전제품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58호, 2024.1.30. 제정, 2024.7.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승강기 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로자를 포상 및 시상할 때 수여 가능한 대상자를 구체화함 (안 제2조)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tel:044-205-4293) (전화: 044-205-4293, 팩스: 044-205-8910)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제고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

이에 따라 기부 가능한 목적, 기부금품의 범위,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 기부금품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연장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률명 변경에 따른 반영** (안 법제명, 제1조, 제2조, 별지서식 제1호, 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
 - 법률명 변경에 따라 개정 전 법률명을 개정된 법률명으로 변경
- ② **기부금품 모집목적 규정** (안 제1조의2)
 -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육성·지원,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성화 등 규정
- ③ **기부금품 범위 규정** (안 제1조의3)
 -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규정
- ④ **기부의 날·주간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의4)
 - 기부의 날 등에 기념행사, 유공자 격려, 기부활성화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은 「상훈법」에 따르도록 규정
- ⑤ **기부금품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 규정** (안 제5조의2)
 - 법률에서 정한 게시·제공할 사항 외에 모집기간, 사용기한, 모집목표액을 게시·제공토록 규정
- ⑥ **공개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 규정** (안 제15조의2)
 - 법률에서 정한 계좌이체, 정보통신망 이용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한 접수 규정
- ⑦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의2)
 - 시스템 구축·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입력할 정보의 범위, 정보 공개 및 제한 사항과 시스템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 ⑧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연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의3)
 - 사업의 특성, 법률·행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등록청의 승인을 거쳐 2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⑨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사용 결과 보고 등 간소화** (안 제3조, 제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 기부금품 모집 등록(변경) 및 모집·사용명세 보고 등을 등록청에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

⑩ 기부금품 범위 확대에 따른 등록서류 및 별지서식 변경 (안 제2조, 제3조, 별지서식 제1호, 제5호, 제5호의 2, 제8호, 제9호)

- 기부금품 범위에 주식이 추가되어 등록시 첨부서류에 주식계좌 사본을 추가하고, 별지서식에 주식 등 유가증권 수송할 수 있도록 개선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전화: 044-205-3181, 팩스: 044-204-8946\)](tel:044-205-3181)

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01.
~06.10.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으로「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 20089호, 2024. 1. 23. 공포)됨에 따라 수출 지원 내용 및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행령 위임사항의 법률화에 따른 입법체계 정비 (안 제3조)

- 기존 시행령에서 「쌀가공산업 5개년 기본계획」수립 사항 중 ‘쌀 가공품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법률화됨에 따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삭제

② 수출 지원대상 및 내용 규정 (안 제16조의2)

-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공동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화
- 법률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쌀가공 산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규정

③ 쌀가공산업의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 권한 위탁 규정 정비 (안 제19조)

- 쌀가공산업의 통계조사 위탁기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만 규정하던 것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뿐 아니라 농식품부가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한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쌀가공식품 제조업 현황 조사’의 추진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함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전화: 044-201-2913, 팩스: 044-868-073\)](tel:044-201-2913)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05.01.
~06.12.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23.5월)’에 따른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수소용품 중 셀·스택 성능평가 목적의 제품과 대용량 수소생산설비 등은 그 제품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대상을 조정하여 국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셀·스택의 성능평가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수소용품에서 제외함 (안 제2조제3항, 안 별표 1의2 신설)
- ② 수전해설비와 수소추출설비는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일정량 이하인 것을 수소용품으로 관리하도록 그 관리 대상을 조정함 (안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tel:044-203-3985) (전화: 044-203-3985, 팩스: 044-203-4766)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04.29.
~06.10.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리제도에 차입, 외부감축활동(상쇄) 제도 도입과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및 예비분 보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법률 제19659호, '23.8.16 공포)됨에 따라, 기존 및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마련(시행일 '24.8.17, '25.1.1)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에 대한 방법·기준 구체화 (안 제22조의2~제22조의4 신설)
- ②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보유 목적에 대한 추가 규정 (안 제22조의5 신설)
- ③ ‘차입’ 가능한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구체화 (안 제24조제2항 신설)
- ④ ‘외부감축활동’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 (안 제24조의2~제24조의3 신설)
- ⑤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안 제39조)

※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tel:044-201-6902) (전화: 044-201-6902, 팩스: 044-201-6915)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04.29.
~06.10.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리제도에 차입, 외부감축활동(상쇄) 제도 도입과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및 예비분 보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법률 제19659호, '23.8.16 공포)됨에 따라, 기존 및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마련(시행일 '24.8.17, '25.1.1)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존 허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 사후 변경 신고로 개정 (안 제9조 및 제17조)
 - 사업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방지시설 증설 또는 교체에 대해 사후 변경 신고토록 함
 -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사후 연도말 일괄 신고
 - 매월 배출량 신고는 다음 달 15일에서 25일로 연장
- ② 추가할당을 위한 배출허용총량 산정 및 할당 방법 (안 제12조)
 -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량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현행 규칙 제12조 별표2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 방법에 의하도록 함
- ③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 방법 마련 (안 제17조의2 신설)
 -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④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서식 마련 (안 제17조의3 신설)
 - 배출허용총량 '할당취소 사유보고서' 및 '할당취소 통지서' 서식 마련
- ⑤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의 신청' 서식 마련 (안 제18조)
 -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서식 마련
- ⑥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기한 마련 (안 제20조)
 -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은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가능
- ⑦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마련 (안 제21조의2 신설)
 -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신청서 서식과 신청 기한 마련
 - 이월 및 차입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 기한 설정
- ⑧ '외부 감축활동' 및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위한 서식 마련 (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 외부 감축활동'의 사업계획서 서식 및 사업 완료 제출 서식 마련
 - '외부감축량'의 인정 신청 서식 및 외부감축량 인정 통보 서식 마련
- ⑨ 가정용 보일러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대상 설정 (안 제33조의2 신설)
 - 시·도지사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제조 판매,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보일러를 현행 시행규칙 [별표5]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보일러로 정의

※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화: 044-201-6902, 팩스: 044-201-6915)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30.
~06.10.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에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① 미회수자료 제공 대상 및 제외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 변제금 회수를 제고 등을 위해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신설에 따라 ‘자료 제공 대상 기준’,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화

* 제공 기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이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제외 대상: 제공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사업주의 사망·폐업 등 정보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제외 대상을 규정

②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안 제24조, 제2항, 제4항)

- (근로복지공단) ‘미회수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위탁할 업무 범위, 해당 체납자에 대한 안내 및 재위탁 사무의 회수 현황 관리를 추가
- (한국자산관리공사) 변제금 회수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재위탁 업무*와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등 위탁사무를 신설

* 대지급금 최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인 사업주

③ 보고 규정 마련 (안 제25조, 제25조의2)

- 근로복지공단(미회수자료의 제공, 재위탁 업무범위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장기미회수 채권 관리 등)에 위탁 사무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위탁사무 처리 현황 등을 제출받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전화: 044-202-7563, 팩스: 044-202-8073)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30.
~06.10.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응자 요건 완화,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

리에 따라, 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삭제,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제출·보고받은 재산목록 등의 자료 사본을 공단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임금등의 미지급 사유 폐지 (안 제8조의5, 제8조의8)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제1항) 개정에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제8조의5(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규정 삭제

② 용자금액 아라비아 숫자 표기 (안 제8조의9제2항)

- 한국맞춤법 제44항에 따라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쓰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마지막 천 단위 아래 자투리 숫자가 없을 때에는 ‘천’도 한글로 쓰도록 정하고 있어 ‘천’과 ‘백’으로 표시한 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정비
-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용자의 신청) ‘1천5백만원’을 ‘1500만원’으로 개정

③ 재산목록 자료의 제공 (안 제10조의2)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목록에 대해 공단의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공단에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사업주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

④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안 제13조의2)

-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관한 자료 제공(제23조의3) 규정 신설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 인적사항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을 해당 사업주에게 사전 고지
- 공단은 대지급금 대위권 행사 시 다음 사항의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안내

*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이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업주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미회수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자의 성명 등 및 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토록 하며,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 경우 제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안내

⑥ 서식 정비 (별지서식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4, 5, 6, 제7호, 제7호의3, 제9호, 제14호)

- 개인정보보호 목적의 사용 시 처벌 조항 및 부정수급 시 제재 조항 안내
- 시행규칙 제8조의5 삭제에 따라 용자 신청 관련 서식 개정
- 부담금 경감 신청서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추가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부담금 경감 신청서 수정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서식 마련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전화: 044-202-7563, 팩스: 044-202-8073)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30.
~06.10.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174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

이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건설사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 기준 신설 등 (안 제89조의3, 별표5의2, 별표5의3 신설)
 - 시·도지사는 입찰참가 제한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정비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 위반행위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별표5의2에서 분리하여 별표5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가액 규모에 따라 공사비의 520% 범위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기준 신설
- ②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안 제68조)
 -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84, 팩스: 044-201-5532)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30.
~06.10.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

이에 따라,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시기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공자 선정 합동설명회 개최 방법 및 시기 (안 제6조의2)

- 합동설명회는 입찰마감일부터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일까지 2회 이상 개최하고, 조합은 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조합원에게 일시·장소 통지

② 신고센터 설치·운영기준 등 (안 제23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의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신고센터에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 등에게 알림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84, 팩스: 044-201-553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4.05.01.
~06.11.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16.8.12.)된 이후 현장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 및 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공동주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 (안 별표 1)

- 수선편목·방법·주기 및 수선율 등을 실제 공사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피난시설·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 고정형충전기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추가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76, 팩스: 044-201-5684)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29.
~06.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24.1.23. 공포)에 따라 국내 데이터 임시저장서버 설치·운영자의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내 데이터 임시 저장서버 설치·운영자의 범위 구체화,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 규정,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 (안 제35조의2 신설)
- ②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안 별표9)

※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tel:02-2110-1566) (전화: 02-2110-1566, 팩스: 02-2110-014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01.
~06.10.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14. 공포)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가명정보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비활동·무실적 결합전문기관에 대해 재지정 심사 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정보전송자 기준 (안 제42조의2)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는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법 제35조의2제1항)와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법 제35조의2제2항)의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정보전송자 범위 규정
- ② 일반수신자 기준 (안 제42조의3)
 -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하는 일반수신자가 전송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 불법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및 기술, 전송내역 기록·보관을 위한 시스템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도록 규정
- ③ 전송 요구 규정 (안 제42조의4~제42조의5)
 -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정보를 본인 대상 전송정보와 제3자 대상 전송정보로 구분하여 구체화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방법, 정기적 전송 요구, 타 법률의 적용 배제규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
- ④ 전송 방법·절차 및 전송 거절·중단 규정 (안 제42조의6~제42조의7)
 - 지체 없는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송 방식 적용, 중계전문기관 활용, 정보주체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전송정보 보관, 전송내역의 통지 등 전송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정보전송자가 전송 요구를 거절·중단할 수 있는 사유, 거절·중단시 통지 절차, 철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규정 (안 제42조의8~제42조의1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분류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재지정 절차, 중요사항 변경, 예비지정,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
-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 절차, 취소시 후속조치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금지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또는 정보 주체의 권리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규정

⑥ 전송요구권 관련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안 제42조의12)

- 전송요구권 이행 여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 정보전송자·일반수신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별 관리·감독 사항 규정
- 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⑦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안 제42조의13)

- 플랫폼 등록절차, 전송이력 플랫폼 제출, 전송 지원 시스템 연계, 플랫폼 통지 등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⑧ 통지 방법·절차 정비 (안 제15조의2제3항)

- 개인정보 전송내역 통지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법 20조제2항)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법 제20조제1항)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⑨ 전송요구 관련 수수료 (안 제47조제4항·제5항)

-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수신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송 요구에 대한 수수료는 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필요 설비 구축비용, 운영비용 및 대상 개인정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⑩ 업무의 위탁 (안 제62조제3항)

- 보호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사항을 기존 업무위탁 규정에 추가

⑪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정비 (안 제29조의2제1항·제4항)

- 결합전문기관 재지정 시(3년마다) 지난 3년간 결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⑫ 자체결합 관리·감독 서류의 분기별 제출 근거 명확화 (안 제29조의4제2항)

-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 목적의 서류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시행령에 위임 조항 명확화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www.kprip.go.kr)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화: 02-2100-3172, 팩스: 02-2100-3199)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2024-04-30 발의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인 상황임 이에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71조의2 신설)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2024-05-02 발의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창의성·전문성이 내재되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작환경이 열악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③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에 관한 우수 인력의 발굴·육성, 사업화 지원 및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금융 지원, 작업환경의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④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2024-04-30 발의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 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여성 농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 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 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2024-04-30 발의

현행법령은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관련 신청서 서식에 따라 경영주인 농업인과 공동경영주를 포함한 경영주외의 농업인으로 구분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지위에 맞는 합당한 대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는 남성 위주의 농가 단위로 설계되어 있어 여성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지위가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현행법은 세대 내 공동경영주는 한 명으로 한정되고 있어, 농업소득 감소로 농외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인 등록에서 배제되어 정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동경영주 개념을 현행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농업경영체등록에 따른 정부 융자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4조의2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2024-04-30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업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을 유지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료, 복지 등에서 배제되어 왔고, 과도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발생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27조제3항·제4항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2인)

2024-04-30 발의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꽃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둔감한 소비 성향을 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일부 수입 꽃 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혼용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5/7(화) 14:0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 고유법 상정
문체위	전체회의	5/9(목) 11:00	-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법안 상정
환노위	전체회의	5/7(화) 10:00	-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법안 상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05/07(화) 14:00	기업상속세 개혁,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자!	유상범 의원실, 강 원연구원	의원회관 5간담회실
	05/08(수) 10:00	검찰개혁 토론회	황운하, 김용민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05/08(수) 14:00	2024년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2기 출범식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05/09(목) 14:00	고립·은둔 청소년을 살리는 청소년상담사의 목소리	허숙정· 고영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05/09(목) 15:00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용혜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05/10(금) 09:30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김성환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05/10(금) 14:00	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	양경숙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05/10(금) 14:00	한부모가족복지 정책 포럼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	김상훈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05/09(목)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3호) 발간	국회사무처	
	05/08(수)	「World&Law」 제2024-9호 발간 - 양육비 이행 강화, 시급한 과제는?	국회도서관	
	05/08(수)	「금주의 서평」 제677호(2024-18호) 발간 - 도서명 : 타이틀 나인 저자 : 세리 보셔트		
	05/09(목)	「현안, 외국에선?」 제81호(2024-9호) 발간 - 중동지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05/10(금)	「예산춘추」 통권 제74호(2024년도 두 번째호)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05/07(화)	「Futures Brief」 24-04호 발간 - 보좌진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 제22대 국회 의 입법과제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4/30(화) 10:00	22대 총선 결과 및 미국 대선 전망과 한반도 평화	박병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4/30(화) 15:00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 -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용혜인 의원실 등	한국스카우 트연맹회관
	5/2(목) 10:00	FAST 채널의 확산과 콘텐츠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필모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5/2(목) 10:00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우원식·양이원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4/29(월)	「팩트북」 제109호(2024-1호) 발간 - AI와 공교육	국회도서관	
	4/29(월)	「THE 현안」 제9호 발간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부터 구제까지		
	4/3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3호(2024-5호) 발간 - 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5/1(수)	「금주의 서평」 제676호(2024-17호) 발간 - 도서명 :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 저자 : 수잔 시마드		
	4/29(월)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4/30(화)	「이슈와 논점」 2232호 발간 - 여성 5대 폭력피해자 통합지원사업 운영과 과제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4.29~05.06)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4/29(월)	노동	최근 저성과자 해고 관련 판결들이 주는 시사점
4/29(월)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4/29(월)	조세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4/30(화)	건설/부동산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례
5/2(목)	조세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하여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은 사례
5/2(목)	소송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5/3(금)	기업인수/합병	2023년 회사법 주요 판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